



광 문 예 남 소 식

2019년 3월 6일(호외)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지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형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홍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462 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ㅍ ㅅ ㅈ ㅊ ㅌ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규 칙

- ◎ 해남군공고제1286호 ----- 1

조 례

- ◎ 해남군조례제2768호 ----- 14
◎ 해남군조례제2769호 ----- 17
◎ 해남군조례제2770호 ----- 88
◎ 해남군조례제2771호 ----- 91

규 칙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19. 1. 31.)에서 의결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6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286호

붙임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1부.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소관 규칙에 반영하고, 인용되는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정비가 필요한 용어와 문장 등을 일괄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내용) 해남군 규칙 조문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상위 법령 제명과 조문번호 및 정비가 필요한
용어와 문장 등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9년 3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규칙 일괄개정 대상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1	기획실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	간사, 기획홍보실장	별지 2호 서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서식 변경
2	기획실		별지 제3호 서식 (회의록)	결재란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별지 3호 서식은 별지 2와 같이 한다.	결재란 수정
3	기획실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4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4	기획실		제7조제2항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	명칭 변경
5	기획실	해남군보 발행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기획홍보실	기획실	명칭 변경
6	기획실		제8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	기획실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8	기획실		제4조제4항	안전건설과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9	기획실		제8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0	기획실	해남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안전건설과장	기획실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11	기획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12	기획실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6조제5호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3	기획실		제8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4	기획실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5	기획실		제10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6	기획실		제12조	기획홍보실	기획실	명칭 변경
17	기획실		제15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8	기획실		제16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9	기획실		제18조제4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0	기획실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1	기획실		제22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2	기획실		제22조제2항	기획홍보실	기획실	명칭 변경
23	기획실		제22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4	기획실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5	기획실		제24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6	기획실		제25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27	기획실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7조제3항	기획홍보실	기획실	용어 정비 및 명칭 변경
28	군정혁신단	해남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3조제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법제 변경
29	군정혁신단		제5조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또는공법의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삭제 (해당법령 조항 삭제)
30	군정혁신단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9조의3 제2항	감사팀장 권익보호팀장	청렴감사팀장 정책평가팀장	명칭 변경
31	군정혁신단		제23조제1항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장	명칭 변경
32	군정혁신단	해남군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상위 법제명 및 조항 변경
33	군정혁신단		제4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34	군정혁신단		제5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35	군정혁신단		제7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36	군정혁신단		제10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37	군정혁신단	해남군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38	군정혁신단		제18조제1항	정책기획팀장	정책평가팀장	명칭 변경
39	군정혁신단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감사담당관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40	군정혁신단		별지 제5호 서식	감사담당관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41	군정혁신단		별지 제6호 서식	감사담당관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42	군정혁신단		별지 제8호 서식	감사담당관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43	주민복지과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2조제3호	영세 부모자 세대가정	한부모 가정	용어 정비
44	총무과	해남군사무위임규칙	별표 (권한 재위임 사항)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문화예술과 안전도시과	명칭 변경
45	총무과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락 용어 삽입
46	총무과	해남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47	총무과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48	총무과		제6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49	총무과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50	총무과	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제5항제2호	안전건설과	안전도시과	명칭 변경
51	총무과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4항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기획실장 문화예술과장 스포츠사업단장	명칭 변경
52	총무과	해남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이상의 공무원이 상의 직위에 있는 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불필요 용어 삭제
53	총무과	해남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54	총무과	해남군통계자료실 운영규칙	제5조제2항	주사	팀장	명칭 변경
55	재무과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56	재무과		제8조	기획홍보실장 회계년도	기획실장 회계연도	명칭 및 용어 정비
57	재무과		제9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58	재무과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59	재무과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0	재무과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1	재무과		제14조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2	재무과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3	재무과		제16조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4	재무과		제17조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5	재무과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6	재무과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7	재무과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8	재무과		제22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9	재무과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70	재무과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1	재무과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2	재무과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3	재무과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4	재무과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5	재무과		제68조제2항	계리 기획홍보실장	회계처리 기획실장	용어정비 및 명칭변경
76	재무과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2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7	재무과		제129조제1항, 제129조제2항	회계년도	회계연도	용어 정비
78	재무과		제132조	회계년도	회계연도	용어 정비
79	재무과		별표 1	제1관서 및 그밖의 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그 밖의 관서 스포츠사업단 축산사업소	명칭 변경
80	농정과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81	문화예술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소장	과장	명칭 변경
82	문화예술과		별지 제16호	소장	과장	명칭 변경
83	문화예술과		별지 제17호 서식	해남군 문예체육진흥사업소(해남군립도서관)	해남군립도서관	명칭 변경
84	문화예술과		별지 제20호	소장	과장	명칭 변경
85	문화예술과		별지 제21호	소장	과장	명칭 변경
86	문화예술과		별지 제22호	소장	과장	명칭 변경
87	문화예술과	해남군 향토문화유적 등의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문화재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자가 된다.	명칭 변경
88	문화예술과		제6조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정서	조례 제12조에 의한 지정서	법령 조항 변경
89	문화예술과		제7조	제7조(안내판) 조례 제8조에 의한 안내판	제7조(안내표지판) 조례 제14조에 의한 안내표지판	명칭변경 및 관련 근거 조항 정정
90	건설주택과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건축팀장	주택행정팀장	명칭 변경

[별지1]

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의안 번호		심의 장소		제안자					
안건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직	위	성명	가	부	직	위	성명	가	부
위원장	군수				위원장				
부위원장	부군수								
위원	당연직				위원				

[별지2]

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

간 사	기획실장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일 시			장 소		심의방법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u>회의내용</u>						

조례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8호

붙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위원회

기획실,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과, 건설주택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총무위원회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u>산업건설위원회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총무위원회 기획실,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u>산업건설위원회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과, 건설주택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9호

붙임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공무원)”을 “개인[공무원]”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본다] 또는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를”을 “강령을”로, “조례에 따라 처리”를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

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로, “위원회 등”을 “위원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남군의회”를 “소속 의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

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을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 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 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
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
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
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
구하는 행위

제11조의 제목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을 “제14조의 외부강의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민법」 제777조”를 “「민법」 제777
조”로,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제4호”를 “제
3항제4호”로,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별지 제2호”를 “별지 제5호”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품 등(이하“수수금지 금품 등””을 “금품등(이하 “수
수 금지 금품등””으로, “아니 하도록”을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및 제33조로 하며, 제16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

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외부강의 등””을 “이하 “외부강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강의 등”을 각

각 “외부강의등”으로,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각각 “외부강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으로,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신고 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 각각 “외부강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직 허가”를 “검직허가”로,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삽입한다.

제14조의2(중전의 제13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를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11호”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 앞에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를 삭제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조례를”을 “강령을”로,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13호”로, “국민권익 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에 위반 되는지”를 “강령에 위반되는지”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제20조”를 각각 “제21조”로, 같은 항 중 “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같은 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인도 하도록”을 “인도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촬영 하거”를 “촬영하거”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경우: 금품 등”을 “경우 :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경우:”를 “경우 :”로, “증거 자료”를 “증거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별지 제13호”를 “경우 : 별지 제16호”로,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를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로,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를 삽입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삭제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조례로서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를 “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조례”를 각각 “강령”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를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삽입한다.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2항 전단 중 “위촉 하여야”를 “위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새로 시작된다”를 “새로이 개시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3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除斥)된다”를 “제척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 제2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중전의 제25조)제3항 중 “개의(開議)”를 “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으로 할수”를 “서면에 의할 수”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자문료의 지급)”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제32조(중전의 제31조) 중 “조례에”를 “장에”로, “이외”를 “이외에”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례”를 각각 “강령”으로, 같은 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 한 다-----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u>를 말한다.</p> <p>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u>단체</u></p> <p>2."<u>금품 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p>	<p>제2조(정의) ----- -----.</p> <p>1. ----- ----- <u>개인[공무원----- ----- 본다] 또는</u> <u>법인·단체</u>-----.</p> <p>가. ----- ----- ----- <u>법</u> <u>인·단체</u></p> <p>2. "<u>금품등</u>"----- -----</p>

<p>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생략)</p> <p>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p>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강령을 ----- ----- ----- 조례를 적용-----.</p> <p>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p> <p>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	---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
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
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
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
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
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
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
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
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

	<p><u>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u>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u>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u></p> <p><u>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u></p> <p><u>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u>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u>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	--

<신 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 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p><신 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p>
<p><신 설></p>	<p>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신 설>

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
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
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는 안 된다.

<신 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
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
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 위원회등-----

1. (현행과 같음)
2. -----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속 의회-----

<신 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

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
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
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
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
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
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
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
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p><u>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u></p> <p><u>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u></p>
<p>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략)</p> <p><u><신설></u></p>	<p>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p>
<p>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생략)</p> <p><u><신설></u></p>	<p>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p> <p><u>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u></p>

<신 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

<p>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 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u>금품 등</u>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 니 된다.</p> <p>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 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서 정한 금액 이하의 <u>금품 등</u>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u>제13조의 외부강의 등</u>에 관 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금품 등</u>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u>금 품 등</u>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p>	<p><u>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p> <p>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 ----- ----- ----- <u>금 품등</u>----- -----.</p> <p>② ----- ----- ----- <u>금품등</u>----- ----- -----.</p> <p>③ <u>제14조의 외부강의등</u>----- ----- ----- <u>금품등</u>----- ----- <u>금 품등</u>-----.</p> <p>1. ----- ----- -----</p>
--	---

<p>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u>금품 등</u></p>	<p>----- --- <u>금품등</u></p>
<p>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u>금품 등</u></p>	<p>2. ----- ----- ----- <u>금품등</u></p>
<p>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u>금품 등</u></p>	<p>3. ----- 「민법」 제777조----- --- <u>금품등</u></p>
<p>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u>금품 등</u> 및 그 소속 구성원 등의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u>금품 등</u></p>	<p>4. ----- ----- ----- ----- ----- <u>금품등</u> ----- ----- ----- ----- <u>금품등</u> -----</p>
<p>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u>금품 등</u></p>	<p>5. ----- ----- ----- ----- ----- <u>금품등</u></p>
<p>6.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수요일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의원 간 금품 등 수수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7. -----
----- 금품 등

④ ----- 제3항제4호-----

금품 등-----
----- 별지 제5호 -----

-.

⑤ -----

-----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
----- 아니 하도록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삭 제>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별지 제6호 -----

 -----.

② -----

 ----- 별지 제7호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④ -----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
----- 별지 제8호 ----- 신고하여야 ----.

⑤ -----
-----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 등-----.

⑥ -----
----- 경우에
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
-----.

⑦ -----
----- 별지 제10호 -----
-----.

⑧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

- . -----

수요일

체가 요청하거나 결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

----- 결직허가-----
----- 외부강의등-----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

----- 별지 제11호 -----
-----.

<삭 제>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p>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u>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u></p> <p>② <u>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친족에게 알리는 경우</u> 2. <u>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u> 3. <u>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u> 4. <u>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u> <p>제17조 (생략)</p>	<p>⑤ <u>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p> <p>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u> 2. <u>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u> 3. <u>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u> 4. <u>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u> <p>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p>
--	---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 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삭 제>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강령을 ----- 별지

제13호 ----- 국민권익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강령에 위반되는지 -----

----- 제21조 -----

④ ----- 제21조 ----- 관한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별지

제14호 -----

수요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 ----- 금품 등

2. -----
----- 금품 등-----

② -----
----- 금품 등-----

----- 금품 등-----

③ ----- 금품 등
----- 별지 제10호 -----

④ -----

----- 금품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 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

----- 인도하도록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금품 등 -----
----- 촬영 하거 -----
-----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후단 삭제>

1. ----- 금품 등 -----
----- 경우 : 금품 등 -----

2. ----- 금품 등 -----

----- 경 우 : ----- 증거자료 -----

3. -----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
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
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
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경우 : 별지 제1
6호 ----- 금품등-----

4. (현행과 같음)

⑥ -----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

----- 금품등-----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삭제>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조례로서 의회 -----

-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 1. -- 강령 -----

--
- 2. 제13조제1항 -----

- 3. (현행과 같음)
- 4. -- 강령 -----

- 5. ----- 강령-----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삭제>

④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소속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 제2항----- 소속 공무원 -----.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촉하여야 ----- 새로이 개시된다.

③ ----- 해촉할 -----.

제24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② --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
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
斥)된다.

- 1. (생략)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
계자와 제7조 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 5. (생략)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자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

----- . <단
서 삭제>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제척된다.

- 1. (현행과 같음)
- 2. -----
- 제7조제2호-----

- 3.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
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
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p><u>야 한다.</u></p> <p><u>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②</u> (생략)</p> <p>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u>개의</u>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u>제24조</u>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p> <p>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u>서면으로</u> 할수 있다.</p> <p>⑥ (생략)</p> <p><u>제26조·제27조</u> (생략)</p> <p><u>제28조</u> (생략)</p> <p><u>제29조(간사) ①</u> 자문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p> <p>② <u>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u></p>	<p><u>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②</u> (현행과 같음)</p> <p>③ ----- ----- <u>개의</u>----- ----- -----.</p> <p>④ <u>제25조</u>----- ----- ----- ----- ----- ----- <u>서면에 의할 수</u> ----- -----.</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27조·제28조</u>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p> <p><u>제29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p> <p><u><삭 제></u></p>
--	---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

제30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
----- 장에 ----
----- 이외에 -----

-----.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
----- 강령-----

----- 강령-----
-----.

② -- 강령-----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p>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p> <p>※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p>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p>※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p>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20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대상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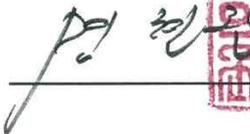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인 도경 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 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70호

붙임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1부.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해남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해남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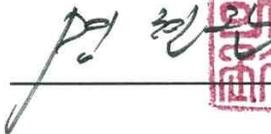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71호

붙임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u>관한 조례</u></p> <p>제4조(<u>실비변상</u>) ①·② (생략)</p> <p><신설></p>	<p>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u>관한 조례</u></p> <p>제4조(<u>실비지원</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u></p>